

화재보험계약의 면책사유인 소요의 의미

- 대학생 시위중 발생한 화재,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

이성남 | 금융감독원 보험검사국 검사역

1. 머리말

그동안 시위문화 개선에 힘입어 최근에는 화염병이 난무하는 시위현장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하지만 우리는 1980~90년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시위현장을 목도하면서 살아왔고 시위과정에서 일어나는 화염병 투척과 최루탄 가스의 교전상황을 흔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시위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상당한 정도에 달했고, 그 중 일부는 보험금 청구로 이어져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 화재보험약관에서는 보험자의 면책사유중 하나로서 "전쟁, 폭동, 소요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한 시위를 벗어난 전쟁, 폭동 등과 유사한 정도에 따른 소요사태에서 발생한 화재손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보다 성숙된 시위 문화의 정착을 기대하면서 "소요"와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살펴 보자 한다.

2. 사례

의류제조 판매회사인 甲은 의류보관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한 다음 보험회사와 임차한

건물 및 동산 일체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乙 대학교 대학생 1,000여 명이 민주화 투쟁을 벌이면서 시위를 하던 중 건물에 화염병을 투척하여 건물 및 동산일체가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화재보험약관 제4조 제6항에 의하면 전쟁, 혁명,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등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이 사건 의류 등에 생긴 손해는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의 시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甲의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3. 이론적 논의

가. 논의 제기

우리 나라 화재보험약관이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를 분류해 보면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사고 등에 의한 면책, 특수한 멸실 손해형태에 의한 손해의 면책, 거대위험 또는 이상위험에 의한 면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쟁, 폭동, 소요 등의 위험은 거대위험 또는 이상위험에 따른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면책사유 중의 하나인 소요의 의미는 무엇인가?

면책사유 중 소요는 폭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한 지방에서의 공공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로 다수의 군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면책사유 개관

보험은 세상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재해를 전제로 하여 그 재난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의 방법으로 고안된 제도라 할 수 있다. 바다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한 보험인 해상보험, 하늘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한 항공보험, 육상교통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재난에 대비한 자동차보험, 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한 화재보험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보험은 위험을 종류에 따라 이에 대비한 보험상품이 개발되고, 새로운 위험이 생성되어 등장하면 이에 대비한 새로운 상품이 개발 판매된다. 따라서 하나의 보험상품이 모든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보험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 모든 위험을 포괄하는 상품은 찾아 보기 어렵다. 화재보험도 화재라는 위험을 중심으로 개발된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은 처음부터 보험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면책사유는 담보위험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담보위험에서 제외된 담보제외 사유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면책사유는 법으로 규정된 면책사유인 법정면책사유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면책사유로 정한 약정면책사유가 있다.

다. 법정면책사유

우리 상법은 제659조, 제660조, 제678조에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것이

법정면책사유에 해당한다. 제659조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면책한다는 규정인데 고의란 어떠한 사실에 대한 인식, 인용을 말하며 과실이란 주의의무 위반을 말한다.

보험사고란 우연적인 사고를 요건으로 하는데 고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의 하나인 우연성을 결한 사고에 해당하고 이러한 고의 사고를 보상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므로 면책사유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대한 과실은 현저히 주의의무를 결한 것을 말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심사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상법 제660조에서는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 사변으로 인한 경우 면책사유로서 전쟁 기타 사변의 경우에는 대량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이므로 보험원리상 이러한 경우의 위험까지 보상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상법 제678조는 손해보험에 적용되는 면책사유로 보험목적물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마모로 인한 손해의 경우 면책한다는 규정으로서 성질, 하자, 자연마모와 같이 본래 처음부터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되는 예정된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원리상 보상하는 손해에서 제외하겠다는 규정으로 풀이할 수 있다.

라. 약정(약관상)면책사유

우리 화재보험약관을 보면 법정면책사유 이외에

다양한 면책사유를 열거해 놓고 있다.

(1) 법정대리인 친족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

동 면책사유는 상법 제659조의 면책사유를 보다 세분하여 보험계약자 등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들의 고의 중과실까지도 면책사유로 끌어들이고 있다. 친족 등의 고의, 중과실 면책은 피보험자의 교사 공모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면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해석한다면 동 조항의 존재의의는 상실하게 되므로 약관조항의 존치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조항으로 보인다.

(2) 도난 · 분실

도난은 통상 절도에 의한 피해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분실은 이른 바 잊어버린 물건, 즉 유실물을 말하여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말한다. 화재가 났을 때 도난 · 분실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 이유는 화재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자연발열 · 자연발화

이 경우는 보험목적 그 자체에 발열 · 발화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되 자연발화 등으로 연소된 손해는 보상하는데 특색이 있다.

(4) 화재로 생긴 것인 듯한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

파열이란 화학작용을 수반하지 않은 용적의 급격한 팽창을 말하며 폭발이란 화학작용을 수반하는 용적의 급격한 팽창과 연소작용을 일으키는 현상을 가리킨다. 파열, 폭발 면책조항은 국문약관과 영문으로

된 F · O · C(F)약관 간에 면책범위에 약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문약관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5항에 의하면 "화재로 생긴 것인 듯한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의 의미는 파열 또는 폭발이 화재발생 전에 생긴 것인 듯한 화재발생 후에 생긴 것인 들판 또는 폭발로 발생한 그 자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고, 다만 파열 또는 폭발로 인한 화산 또는 파급된 화재 손해는 보상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영문으로 된 F · O · C(F) 약관의 경우에는 폭발담보 특약을 제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화재가 폭발에 선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폭발에 의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¹⁾

마. 면책 사유인 소요의 의미

형법에서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 가운데 소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소요죄에서 소요란 "다중이 집합하여 폭동, 협박, 손괴의 행위를 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를 가리킨다.²⁾

화재보험약관규정을 보면 "지진, 분화, 해일,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동 화재보험약관은 소요 등의 경우 보험료 산출에서 예상하고 있는 통상적인 위험에서 벗어난 대규모 위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험자의 인수능력 밖의 위험이라는데 착안하여 둔 면책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면책조항에 열거된 소요는 폭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한 지방에서의 공공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로 다수의 군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판례

가. 대학생 시위가 화재보험약관 "소요 기타 유사한 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학생 5,000여 명이 대학교 정문 및 지하철역 주변에서 시위하는 것이 화재보험약관 면책조항 "소요 기타 유사한 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화재 당시 대학생들은 단순히 경찰의 저지선을 뚫기 위하여 화염병을 투척하기에 이르렀고, 그 폭력행사의 정도도 경찰에 대하여서만 화염병을 투척하였을 뿐이며, 인근의 다른 상가나 행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폭행이나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시위 장소 또한 지하철 역에서 대학교 정문에 이르는 정도에 한정되었고 다른 지역으로는 확산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며,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요건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참작하면 대학생들의 폭력사태는 그 폭력사태의 발생경위와 장소 및 당시에 있어서의 폭력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건대 한 지방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의 소요, 기타 유사한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보험사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³⁾

나. 대학생 시위 중 건물에 화염병을 던져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여부(소극)

대학생 30여 명이 반민자당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하다가 대학재단 이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화염병을 던져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화재보험약관에서 "지진, 분화,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위와 같은 사태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빈도나 그 손해정

도를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타당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시에는 사고의 대형화와 손해액의 누적적인 증대로 보험자의 인수능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 있다. 본래 보험제도 자체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장래의 우연, 돌발적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고 발생의 예측곤란과 피해 극대화를 이유로 한 면책사유의 요건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조항에 열거된 면책사유 중 소요는 폭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한 지방에서의 공공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로 다수의 군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⁴⁾

5. 사례의 해결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학생들의 시위사태는 화재보험약관이 예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의 하나인 "소요"로 보기 어렵다. 대학생 시위중에 발생한 화재는 화재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범위 내에 있는 사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건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보험자가 "소요" 면책사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인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주)

1)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5261 판결

2) 이재상, 형법각론(신정판), 422면

3)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55975 판결

4) 서울지방법원 1993. 12. 8 선고, 93가합14504 판결